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3.07.01.
제1차 개정 2005.07.15.
제2차 개정 2006.01.01.
제3차 개정 2006.06.08.
제4차 개정 2010.08.02.
제5차 개정 2014.12.18.
제6차 개정 2015.10.19.
제7차 개정 2017.07.21.
제8차 개정 2020.0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5.26. 신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 입주자선정, 보육 지원 등 전체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020.05.26. 신설)

제3조(운영) 조삭제 (2020.05.26. 개정)

제4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0.05.26. 신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자)'은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졸업기업'은 입주자가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창업보육부담금’이란 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세부 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입주보증금’이라 함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창업 보육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8. ‘성공부담금’이란 센터에 입주한 입주자가 자립 경영을 이루고 졸업 시 기부 또는 납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제5조(명칭 및 소재지) 센터의 정식명칭은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며,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교내에 둔다. (2020.05.26. 개정)

제6조(설치목적 및 취지) 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독립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5.26. 개정)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센터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0.05.26. 개정)

제8조(센터장 및 매니저) ①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2020.05.26. 개정)
②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3장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15.10.19. 개정) (2020.05.26. 개정)
③ 창업보육매니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

한 자를 말한다. (2020.05.26. 신설)
④ 창업보육매니저는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입주기업의 관리, 지원 등 창업 성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창업보육매니저의 세부 자격과 등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따른다. (2020.05.26. 신설)
⑥ 매니저 이외에 행정지원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2020.05.26. 개정)
⑦ 매니저, 행정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인사 규정, 계약직원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020.05.26.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입주기업 심사·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 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020.05.26. 개정)
②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내부 당연직 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총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는 창업보육센터장,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장,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장 3인으로 하고, 외부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청, 원주시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유관부서 과장급으로 한다. 기타 외부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이 제청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한다.(2020.05.26. 개정)
③ 입주 심사는 운영위원 1/3 출석 시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입주”, 60점～69점 “입주보류”, 59점이하 “입주불가”로 의결한다. (2020.05.26. 개정)
④ “입주보류”시 센터장은 입주 보류 사유가 보완될 경우 추가심사를 통해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 입주불가” 시 신규 입주업체의 경우 보완하여 차기 입주 심사에서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재입주업체의 경우 퇴거 또는 졸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020.05.26. 개정)
⑤ 단, 입주 심사의 경우 운영요령에 따라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전임 매니저가 운영위원을 대리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최종심의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개최 시 최종 추인받아야 한다. (2020.05.26. 신설)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제10조(입주대상자)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

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제26조를 따른다. (2020.05.26.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대상 자격에서 제외한다. (2020.05.26. 신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영위자
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객관적 사실로 부적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입주 신청) 입주를 원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별도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05.26. 신설)

제12조(입주자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심사를 거쳐야 하며, 타 센터를 입주한 경력이 있거나, 센터에 대표자 명의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유사한 업종으로 중복하여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② 센터는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020.05.26. 신설)
③ 입주 심사는 사업성, 기술성, 기술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심사위원 총합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2020.05.26. 신설)

제13조(입주승인취소)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1. 입주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 입주 계약 후 소정의 기일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입주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4조(입주시기 연기) 입주계약 또는 입주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센터에 알려야 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한다. (2020.05.26. 신설)

제15조(입주계약) ① 입주(예정)자와 센터는 센터가 정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020.05.26. 신설)

②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③ 입주(예정)자가 입주 계약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주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2020.05.26. 신설)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② 3년을 초과하여 입주하길 희망하는 자는 제①항에 따른 첨단기술업종, 생산형 입주자에게로 한정하며 그 외의 업종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③ 위 제②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은 졸업 또는 퇴거를 진행해야 한다. (2020.05.26. 신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매뉴얼'에 따른다. (2020.05.26. 신설)

제17조(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입주자는 보육실 사용에 따른 입주부담금 및 관리비를 센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2020.05.26. 신설)

제18조(성공부담금) 성공부담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센터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제19조(운영규칙준수)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센터의 제 규칙 및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센터(장)는 시정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② 만약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규정 및 계약에 근거하여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제20조(사업자등록) ① 입주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로 본점 소재지를 센터로 변경하

여야 한다. (2020.05.26. 신설)
② 단,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20.05.26. 신설)
③ 만약 제1, 2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고 센터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2020.05.26. 신설)

제21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2020.05.26. 신설)
1.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경우
2. 입주 계약이 만료된 경우
② 졸업대상 기업은 졸업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20.05.26. 신설)

제22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2020.05.26. 신설)
1.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센터는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2020.05.26.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퇴거 통보를 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05.26.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접수된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2020.05.26. 신설)
단. 이의제기가 센터 운영목적,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퇴거 예정일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센터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다. (2020.05.26. 신설)

제23조(계약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입주자는 2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020.05.26. 신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입주 심사 시 통과된 사업내용 변경
3. 법인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5. 기타 계약변경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장 재원 및 예·결산

제25조(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창업보육부담금,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2020.05.26. 개정)

제26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020.05.26. 개정)

제2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규정·요령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2020.05.26.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